

2015. 10.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서울고법 2015노1998호) 심리방향

- 제7형사부 재판장(김○○ 고법부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직후부터 **1심, 환송 전 원심, 상고심 판결과 기록, 법리 등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 쟁점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였음**
- 현재 **공판준비기일을 2회 진행**하였고, **향후 2015. 10. 16. 10:00 공판준비기일이 1회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진행한 후(10. 23. 또는 10. 30.) 11월에 공판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만 하고 본안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공판·증거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1심과 환송전 당심에서 쟁점화되지 않은 공모관계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난 이상 그에 대한 재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쟁점은 대략 다음과 같음(공판준비기일에서 구두로 개시한 내용이므로, 향후 그 밖의 쟁점이 추가될 수 있음)
 - 원세훈 피고인의 국정원장 취임시기⇒ 2009. 2. 12.(목) 오후 7시
 -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적시된 시기⇒ 2009. 2. 14(토)
 - 공판·증거기록상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원세훈 피고인의 직무상 발언은 2009. 5. 15. 전부서장회의에서 이루어졌으나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이 정치관여지시라고 볼 수 없음. 다만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최초의 직무상 발언시기는 2010. 1. 20. 인데, 이를 기초로 2009. 2. 14. 이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 사실인정이라는 것이 재판장의 입장임
 - 공판검사는 재판부가 제1심과 환송전 당심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았고, 전혀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위와 같은 새로운 정황을 심리하는 심리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함

- ☐ 대내적 공모관계에 관한 입증구조와 입증정도
- ☐ 국정원법상의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와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에 관한 해석
- ☐ 국정원법 제3조에서 정한 국정원(직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해석
- ☐ 원세훈 피고인의 국정원장 지시강조말씀이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하는지 등

■ **석명준비명령은 3회 있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8. 4.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증거와 트위터 계정을 정리하고, 찬 반클릭, 댓글 게시, 트윗 또는 리트윗 행위의 사실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
- 9. 30.자⇒ '변호인들에게는 위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에게는 위 추가 증거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
- 10. 6.자⇒ '검사에게는 의견서, 환송 전 원심판결 등 심리과정에서 언급되거나 관련 쟁점이 논의된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결들과 현재 결정문에 관한 서증제출 준비를, 쌍방에게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명하고',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공소 제기된 처벌 규정, 검찰청법 등 법률, 이 사건에 관한 심급별 판결, 공판조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중 일부, 일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검토를 명하는 취지

■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향후 심리 범위와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움. 다만 재판장이 법정에서 관련 법리와 입증구조, 증거가 충분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반복적으로 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간단히 심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보석결정도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보석결정 관련 내용**

- 2015. 2. 9. 환송 전 항소심에서 최초 구속이 되었으므로, 최종 구속 만료일은 2016. 2. 8.임
- 한편,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2015. 7. 23. 구속기간 갱신결정(구속 만료일



2015. 8. 8.)을 하였고, 2015. 9. 21. 구속기간 갱신결정(구속 만료일 2015. 10. 8.)을 하였음

- 그런데 환송 후 항소심이 2015. 10. 6.자로 보석허가결정을 함으로써 2015. 9. 21.자 구속갱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

재판장과 주심판사(최○○ 고법판사, ○○기)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